

2005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경쟁물품 지정공고

조합 기획관리팀 제공

우리조합에서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 바,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(제2004 - 156호, 2004. 12. 31) 하였다. 이에 대하여 우리 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5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.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골판지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참고로 2005년 1월부터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의 지정 물품인 담배 · 인삼 골판지상자는 단체수의계약 물품에서 제외되었다.

I.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

I. 총 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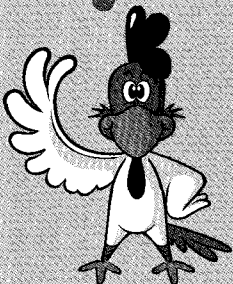
가. 목 적

이 총칙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, 제9조의 2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단체수의계약물품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나. 물품의 명칭 및 분류

물품의 분류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하며, 전호의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한하여 다음호의 기준을 적용한다.

- 1) 정부물품분류표의 품명식별 번호(7단위, 소분류)
- 2) 수요처 규격
- 3)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명칭과 규격
- 4)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(5단위). 단,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의한 분류를 보완하



여 업종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에 한한다.

- 5)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여러 품목을 군별로 묶거나 또는 물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분류할 수 있다. 다만, 여러 물품을 군별로 묶어 분류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개별물품명을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.

다. 계약체결 대상조합 및 지역

- 1) 계약대상 지역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에 의거 전국 또는 서울특별시·광역시·도에 의한다.
- 2) “전국조합”은 구매기관이 소재한 구역내 조합원의 유무에 관계없이 전국을 대상구역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- 3) “지방조합”은 해당 업무구역내에서 소요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다. 다만, 당해지역에 지방조합이 계약체결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, 연합회가 설립되어 있지 않거나, 연합회가 지정제의 등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구매기관은 해당물품을 지정 받은 지방조합 중 1개의 지방조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4)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“연합회”와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한다.
 - ① 2개이상의 지방조합의 업무구역에서 소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및 구매기관의 소재지와 납품장소가 상이하여 2개 이상의 지방조합의 업무구역에 해당하는 경우
 - ② 지방구매기관이 중앙기관에 구매의뢰하거나 중앙

기관이 계획구매에 의하여 중앙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

- ③ 구매기관의 업무구역내에 회원조합이 없거나 계약체결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과 관련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
- ④ 구매기관이 계약 및 납품의 안정성, 납품 품질의 균일화 등의 이유로 연합회와 직접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

라. 구매기관 등의 준수사항

- 정부 등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을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는 중소기업제품구매계획 중 “중소기업제품구매증대를 위한 조치사항”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단체수의계약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.

마. 기타의 규정

-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각종 법률과 이 총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물량배정, 수혜기준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“단체수의계약운용규칙”에 따라 운영한다.

II.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 지정물품 : 138개 물품(한시지정 12개 포함)

2005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내역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www.smba.go.kr)에 게재되어 있음

☎ www.smba.go.kr → 정보공개자료방 → 법령정보 → 공고

〈2005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〉

물품번호	특정규격 및 번호	표준산업 분류번호	물품명	계약대상 지역	조합명
8115-050		21211	골판지상자	전 국	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

※ 2005년 1월부터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의 지정 물품인 담배·인삼 골판지상자는 단체수의계약 물품에서 제외되었다.